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정부 제출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시·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
(안 제40조제4항제2호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
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